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

학교장님께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보급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사례】

- ① '20. 5. 21. 00:05경 00구 00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위반하는 전동휠 충격(1명 사망)
- ② '20. 10. 24. 21:10경 00구 00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타고 신호위반 직진하여 우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택시와 충격(1명 사망, 1명 중상)

또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중·고생이 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청소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과 덧붙여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면허 소지 의무가 면제 되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운행이 금지됩니다.

* 안전수칙(안) 주요 내용

- ▶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 이용. 차도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통행”
 - ※ 인도주행x, 상위차로 통행x, 횡단보도는 끌고 가기, 좌회전은 직진신호 2번에 나눠서
- ▶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하고 “1명만 이용”
- ▶ 어린이(13세 미만)는 사용할 수 없음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하지 않기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0. 12. 10.) 이전까지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현행법상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됩니다.

둘째, 통행방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도 다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관련한 홍보물(홍보 전단지)을 우편 발송할 예정으로 조화·종례시간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6.

인천논현경찰서장 강 현 수 배상